

第27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第2號
(休會中) 運營委員會會議錄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1993年8月20日(金) 午後3時

場 所：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의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의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城北區廳長 提出) 1面

(15時10分 開議)

○議事係長 林洛吉 지금으로부터 第27回 臨時會 休會中 第2次 運營委員會가 開議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 敬禮를 하겠습니다. 國旗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旗에대한敬禮)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炯九 運營委員會 委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18일 會議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決算檢查委員會에 대한 實費辨償條例 改正問題와 關聯하여 會議를 召集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檢討하셔서 오늘 會議는 이번 臨時會議에서 處理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 두분의 委員님께서 參席하셔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7回 臨時會 休會中 第2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의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5時12分)

○委員長 金炯九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의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겠습니다.

財務局長님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朴洙徹 財務局長 朴洙徹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 金炯九 委員長님을 비롯한 運營委員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問題를 說明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事項을 진작 좀 알아가지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委員님들께서 審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렸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17일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돼 가지고 19일날 일단 接受시켰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他 地方自治區에 대한 여러가지 事項도 파악을 해왔고 진작 이 問題에 대해서 審議를 받아가지고 施行에 들어갔어야 될 것을 늦게나마 올리게 되어서 여러 委員님들 번거롭게 해드려서 財務局長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決算檢查委員의 日費와 旅費를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함으로써 決算檢查를 효율적으로 執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提案 理由가 되겠습니다.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그동안 議員이 아닌 檢查委員에게만 決算檢查 作業日과 本會議 出席日에 한하여 實費를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區議員인 委員에게도 지급하되

단, 地方議會 議員인 경우에는 議會會期와 중복된 期間은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시기는 決算檢查 作業이 끝나는 날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支給基準은 기 되어있는 서울特別市 城北區議會 議員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條例 第6條 및 第7條 規定에 준하여 支給할 수 있도록 하여 豫算의 합리적인 執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상으로 本條例 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를 듣겠습니다. 宋坪柱 專門委員님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宋坪柱 檢討報告를 하겠습니다.

(檢討報告는 끝에 실음)

○委員長 金炯九 專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改正案에 대한 質疑·答辯을 하겠습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徐海善 委員님 말씀하세요.

○徐海善委員 신·구조문 대조표 3페이지를 보면, 改正案에 보면 第7條 實費辨償 檢查 委員에게는 決算檢查 作業日과 本會議 出席日에 한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日費를 支給한다. 다만 地方議會 議員이 委員인 경우에는 地方議會 會期와 重複되는 期間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日費는 決算檢查가 終了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하는 것을 ‘日費는 決算檢查가 終了되는 날 支給한다’라고 이렇게 明示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日費와 旅費에 대해서는 서울特別市 城北區議會 議員 日費와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支給基準에 준하여 ‘支給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支給한다’라고 아주 明示해서 改正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또 다른 委員님 말씀하세요.

일괄질문, 일괄답변하죠. 다른 委員님 없으시면 예, 俞鎮武委員님 말씀하세요.

○俞鎮武委員 俞鎮武委員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문구는 現 案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다’라고 하면 內容이 딱딱하니까 남들이 볼때는 議員들의 權限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現 案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炯九 또 다른 委員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財務局長님 간단히 答辯해 주시죠.

○財務局長 朴洙徹 徐委員님과 俞委員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作成하면서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支給하는게 原則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리상, 기술상 저희가 ‘할 수 있다’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法律, 기술상 問題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가 研究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좁은 소견으로 여기저기 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각각입니다. 어떤 地域에서는 ‘한다’라고 되어있고 그런가하면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 데가 있고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徐委員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다른 委員님 더 質疑하실 委員님 없으시죠?

(「예」하는 이 많음)

이상 質疑를 終結하고 討論하도록 하겠습니다. 本 條例案에 대하여 贊成이나 反對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申宗鉉委員님.

○申宗鉉委員 申宗鉉委員입니다.

決算檢查委員이라하면 우리 城北區 總豫算을 執行한 結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檢討하고 分析을 해서 會計處理를 해주고 終結을 해주는 것이 決算檢查委員의 任務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가지 法的, 社會的 機能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問題에 대해서도 그동안 問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關係는 運營委員長님 命을 받든 또 議長님 命을 받든 命을 받아서 公的인 任務를 執行할 때는 반드시 우리 條例에 의해서 成文化시키지 않다 손치더라도 실상

議長님이나 委員長님하고 서로 相議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執行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局長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다'라는 관계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法的으로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徐海善委員長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한다'로 고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支給하는 辨償입니다. 日費가 아니고 그날의 모든 經費를 勘案해서 實費로 辨償하는 支給이기 때문에 業務執行하고 할 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차제에서 '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炯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承泰委員長.

○金承泰委員 지금 徐海善委員長하고 申宗鉉委員長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가 조금 修正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條1項에 보면 이미 檢査委員들에게 日費를 支給한다 라고 明示가 되었습니다. 實費 辨償 1項 '檢査委員에게는 決算檢査 作業日과 本會議 出席日에 한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日費를 支給한다'

2項은 日費를 이미 支給한다 하는 項을 언제 支給하느냐 하는 項이기 때문에 決算檢査가 終了되는 날에 一時拂로 支給할 수도 있고 또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支給할 수 있다는 事項이기 때문에 日費를 꼭 支給한다는 것은 1項에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2項은 修正을 안해도 될 것 같고 3項도 2項과 같은 문구가 되기 때문에 6條, 7條 規定에 의한 支給基準이 이미 明示되어 있기때문에 支給基準이 明示된 것에 대한 말은 '支給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支給基準에 의하여 '支給한다'라고 해서 3項은 '支給한다'로 고치고, 2項은 '支給할 수 있다'로 해봐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徐海善委員長하고 申宗鉉委員長님이 좋은 指摘을 해주셨는데 문항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3項만 '支給한다'로 고치고 2項은 언제 支給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一時拂로 支給할 수 있다 이렇게 해봐도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委員長 金炯九 金承泰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安傑瑤委員 金承泰委員의 發言에 同意합니다.

○徐化錫委員 7條1項에서 '支給한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2項도 '支給한다'로 해야만 맞습니다. 그래서 3項도 역시 '지급한다'로 통일을 해야만 문맥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徐海善委員 조금 補充發言을 하겠습니다

2項에 보면 '日費는 決算檢査가 終了되는 날에 一時拂로 支給할 수 있다'하는 것을 '日費는 決算檢査가 終了되는 날 支給한다'하는 것으로 제가 修正한 것은 한달동안 꼭 決算檢査를 하는 과정에 내가 부득이 필요한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쓸려고 해도 終了하는 날 '一時拂로 支給한다'했을 때는 참 問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一時拂이라는 걸 削除하는 理由가 그겁니다. 그런 것을 勘案하셔서 結論을 내려주시죠.

○金承泰委員 徐委員長님 補充說明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충분히 說明을 드렸습니다마는 日費는 '支給한다'가 이미 1項에서 이미 完了가 됐고 2項, 3項은 그것에 대한 補完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3項도 어떤 規定에 의해서 支給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支給한다'가 되는 것이 6條, 7條 規定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支給한다'가 되는 것이고 2項은 日費가 언제 나가느냐 하는 項인데 지금 徐海善委員長님 一時拂이라는 말을 뺀다고 하면, 日費는 決算檢査가 終了되는 날에 支給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필요할지 안할지 그런 얘기하기도 곤란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간에는 전혀 支給하지 못하는 事項이 되거든요.

○徐海善委員 一時拂로 支給한다고 하는 문맥을 넣어 놓는 것보다는 안넣어놔야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金承泰委員 융통성때문에 말씀하셨으면 이것 그대로 놔둬도 괜찮아요.

○委員長 金炯九 徐海善委員長님 意見과 金承

泰委員長 意見を 놓고 結論을 짓죠.

○吳案泳委員 그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지금 1項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되어있고요, 2項은 어디까지나 支拂時機와 支拂方法에 대한 융통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3項에 대해서는 아까 金承泰委員長이指摘하신대로 '支給한다' 이렇게 規定하는 것이 문맥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炯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徐海善委員長 意見에 贊成하시는분 舉手해 주세요.

(舉手)

○安敦洙委員委員長님, 지금 2項을 그냥 두고 3項을 고치라는 意見이 있었고요. 또 3項을 고치자는 意見이 있었고, 2項, 3項을 고치자는 애기가 있었는데 아까 兪鎮武委員長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現行대로 해도 무난하리라, 原案대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고 또 權利랄까 義務가 다 附與된 것 같기 때문에 現行대로 놔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그러면 지금 金承泰委員長의 意見은 3項에 '支給할 수 있다'를 '支給한다'로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委員長 舉手해 주세요.

(舉手)

그러면 原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委員長들 舉手해 주세요.

(舉手)

그러면 원안대로 進行하겠습니다.

더이상 討論이 없으시면 城北區議會 決算 檢査委員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는데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可決하여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33分 散會)

○出席委員

金 承 泰	金 榮 植	徐 海 善
徐 化 錫	申 宗 鉉	申 晉 玉
安 傑 瑤	安 敦 洙	兪 鎮 武
李 萬 載	李 天 浩	金 炯 九
朴 演 洙		

○缺席委員

趙 基 燦 韓 春 子

○參席議員

副 議 長 吳 案 泳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坪 炷

○參席公務員

財 務 局 長 朴 洙 徹